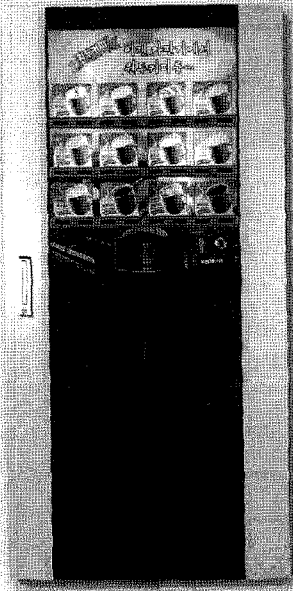


특별기획



#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실용 법령풀이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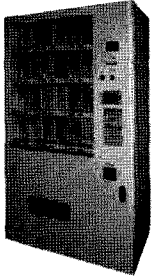
자동판매기 영업관련 법제

Part 2.

자동판매기 업종선택시 유의사항

Part 3.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자판기 영업은 다양한 내용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되는 법령들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나하나 세심히 체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판기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자판기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동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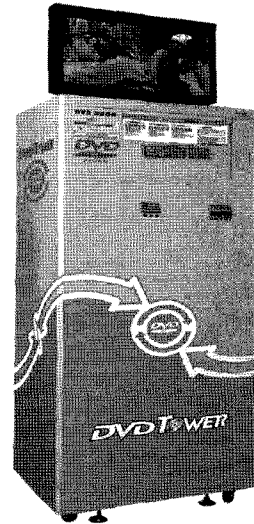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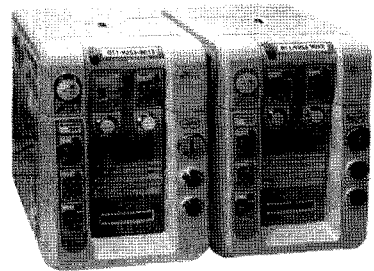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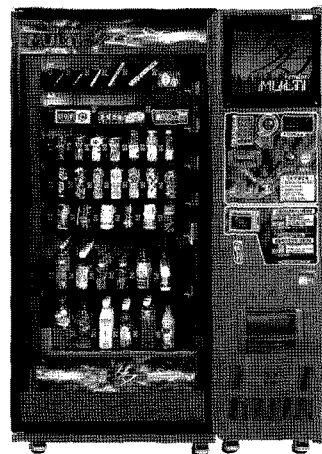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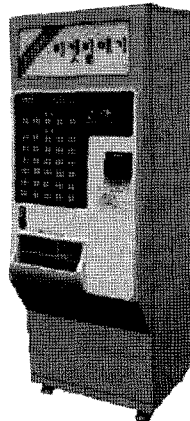
기 영업자 관련실용 법령풀이]를 마련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 사이트에서 발췌,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자판기 영업자들이 숙지해야할 관련 정보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본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현업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 게재를 했다. 이번호에는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에 관한 법령들을 게재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장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 진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 실용 법령 풀이]는 다음호에도 연재가 될 예정이다. 독자님들이 이 법령 풀이 정보를 잘 숙지 활용해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본 귀중한 정보를 만들고 제공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주>



Part1.

##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판매기 영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학교보건법」, 「담배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 ☞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 ☞ ‘영업’ 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자동판매기 기계를 사거나 빌린 경우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래에서 “사업자” 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말하고, “고객” 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받고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해당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 고객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
  - ☞ 자동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국유재산법**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청사, 관사, 국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 ▶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본문).
-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단서).

### 담배사업법

-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합니다.
-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 학교보건법

-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학교보건법」 제5조).
- ▶ 담배자동판매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사업권유거래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업권유거래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한 사업자, “소비자”는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 ▶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사항을 설명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1.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권유거래에 필요한 재화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소비자는 재화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

Part2.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의 제한**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 고시 제2010-8호, 2010. 12. 30. 발령·시행) 참조] .

**□ 청소년유해 매체물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과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및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전자출판물’이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자동기계장치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동기계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다음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은 제외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위반시 제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2항에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전시·진열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37조제1항제6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5).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56조제2항제2호).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의 제한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약물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
  - √ 이에 따라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호, 2005. 6. 3. 발령, 2005. 7. 1. 시행)].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 ※ 자동기계장치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다음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3호).
  - 청소년유해약물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또는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유해약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호, 2005. 6. 3. 발령·2005. 7. 1. 시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6), (7)).
  -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나목)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 ※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5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54조)

part3.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설치장소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치장소 확보**

-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는 교육기관 · 의료기관 · 금융기관 등의 건물 내부, 직장인 밀집 지역, 학교 주변, 교통량이 많은 장소, 스포츠 및 오락시설 근처 등이 있습니다.
- 주변의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수, 이들의 소비성향, 인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설치장소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치장소가 국유재산인 경우**

- 국유재산의 개념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 √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 √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항만 등)
    - √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
    - √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 **국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
-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

□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 ·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 위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 개찰 · 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06-6호, 2006. 3. 9 발령·시행)].
-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사용료 납부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대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47조).
- 위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06-6호, 2006. 3. 9 발령·시행)].
  -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관리청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관리청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대부료 납부
  - 일반재산을 대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1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47조).

※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유재산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장소가 공유재산인 경우**

- 공유재산의 개념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1항).
- 행정재산이란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청사, 공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항만, 시·도립 공원 등)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병원, 지하철, 상하수도 등)
  -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3항).

□ **공유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행정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본문).
  - 다만 예외적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 위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자세한 입찰참가 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를 참고하세요.

- 사용료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 사용료는 그 전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채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 □ 일반재산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 경쟁입찰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제2항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대부료 납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사용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

※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유재산이용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